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상위법의 조항을 일치시키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일부조항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의 조례 위임조항 개정(안 제1조)

나.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정(안 제5조)

다. 기금심의위원회 시의원 추가 및 간사 조항 신설(안 제6조)

라. 그 밖에 조례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따라 구미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앞의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삭제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3조제3호(중전의 제2호) 중 “기금의”를 “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기타 대통령령이”를 “그 밖에 영으로”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제4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제4조제8호(중전의 제7호) 중 “관리, 운용 및 징수”를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 출납명령관으로”를 “기금운용관으로,”로, “기금출납공무원”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기금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제6조의 제목 “(기금심의위원회)”를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및 제3호(중전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1명
2. 기금업무담당국장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제4항 단서 중 “다만”을 “ 다만”으로, “잔임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금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제1호 중 “동조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운용”을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식품위생수준”을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으로 한다.

제9조 앞의 “제3장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시장은 구미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를 “시장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상환조건등”을 “상환조건 등”으로 한다.

제13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미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구미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영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	제2조(정의) ----- ----- 뜻은-----.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개조 및 보수하

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
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구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
한다.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 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
익금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

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
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
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구미시장 (이하 “시
장”이라 한다)이 구미시 식품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기금의 조성) -----
-----.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
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

4. 그 밖에 영으로-----
--

제4조(기금의 용도) -----
-----.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u>선을 위한 융자사업</u> 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u> 3. <u>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u> 4. <u>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u> 5. <u>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u> 6. <u>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u> <u><신 설></u> 7. <u>기금의 관리, 운용 및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u> 8. <u>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u>	<u>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u> 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u> 3. <u>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u> 4. <u>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u> 5.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지원</u> 6. <u>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u> 7. <u>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u> 8. ----- <u>운용·관리</u>----- ----- 9. <u>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u>
--	--

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 ①·② (생략)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을 기금 출납명령관으로 식품위생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신 설>

④ (생략)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금운용관으로,-----
-----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기금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

④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위원회”라 한다-----

② ----- 7명 -----.

③ -----

----- 사람으로

<후단 신설>

<신 설>

1. 식품위생담당국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신 설>

<신 설>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1명
2. 기금업무담당국장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

--. 다만-----

----- 남은 임기로--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

제9조(융자사업) 시장은 구미시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
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위생관
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
다.

제11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위
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
도 및 상환조건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위하여 기금업무담당과장을 간
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
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1. 제4조에 따른-----

2. ----- 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시민 영
양수준 --

<삭 제>

제9조(융자사업) 시장은-----

-.

제11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

-- 상환조건 등-----
--.

<삭 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u> <u>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u>시행</u> <u>에</u> ----- -----.
--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 라. 생략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

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 나. 생략

6. 식품보존업

가. ~ 나. 생략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 나.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 바. 생략

제62조(기금의 운용) ①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위 생 과
입 안 자	과 장	박 수 연
	담 당	변 동 석
	담 당 자	김 미 향 (480-5494)